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소형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30
----------	-----

발의연월일 : 2025년 2월 28일

발의자 : 강수진, 고영옥,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이용진,
이인순, 이호건, 임태근, 임현주,
정기혁, 정병기

1. 제안이유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자율적으로 봉사하는 경로당 회장 등을 「노인복지법」 제24조에 따른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지원대상 조문 정비(안 제2조)

나. 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6조)

다.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조문 정비와 지원기준 확대(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필요시 조치

다. 사전협의 : 어르신·장애인복지과

라. 입법예고 : 2025. 3. 6. ~ 2025. 3. 12.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 안내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중전의 제6조) 제1항제1호 중 “시설운영비”를 “운영비”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9호를 제10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양곡 및 부식 구입비
3. 냉·난방비
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제8조(중전의 제7조) 중 “제6조”를 “제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2조(지원대상)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있는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p> <p>제6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 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 안내 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로당 시설운영비
 2.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양곡지원
 3.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냉·난방비
 4. 경로당 회원 증식에 소요되는 주·부식 비용
 5. ~ 8. (생략)
- <신설>
9. (생략)
 - ②·③ (생략)

제7조(정산 등)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 분기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 등) ① -----

-----.

1. ----- 운영비
2. 양곡 및 부식 구입비
3. 냉·난방비

<삭제>

5. ~ 8. (현행과 같음)
9.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
10. (현행 제9호와 같음)
-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정산 등) 제7조-----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 제10조 (생략)

-----.

제9조 ~ 제11조 (현행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와 같음)